



# 기안용지

분류기호 432.4  
문서번호

(전화번호 342 )

전결규정 조 호  
전결사항

처리거한		기안자	김익진	결재일자	제2시지
시행일자	1970. 3. 18	기안일자	70. 3. 10.	결재일자	

보조기	도시계획국장	공고제 61호
조	구획정리과장	
관	계획계장	

영조	환지계장	도시계획과장	사무과장	법무과장 (유상선)
영조	정지계장	건축과장	시민과장	행정과장
경수참조	유신	각안참조	통정	정서

제 목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공고

제 1 안 내부결재

1967. 8. 10 토지구획정리 사업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시행명령된 신림지구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당시의 시정방침상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 조, 제 33 조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 2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제 목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공고

1970. 2. 25 (70.2.11)에 시행함

서울 도시계획사업 신설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당시의 시청 목표와 주민의 필요에 응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서 시행규칙 및 사업계획을 정하고, 사업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동 지구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이에 관계된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970. 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목적 별책 사업 계획서와 같음.
- 2. 시행면적 107 만평
- 3. 사업범위 영등포구 독산동, 신림동, 봉천동 각 일부
- 4. 비용부담 및 환지계획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함.
- 5. 공공용지 부담 및 청산금 처리방법 시행규칙 및 조예에 정하는 바에 의함.

공  
방  
3  
호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장

제목 등 건

- 1.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공고를 발지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공고문을 게시하여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등시 관계동, 통, 반을 통하여 당시의 도시개발 계획을 전달은 물론,
- 2. 별첨 토지원부 지역내의 건축허가는 환지에정지 지정공고시 까지 일체의 사무를 중지하기 바람.

첨부. 공고문 사본.

토지대장 (관할 구청안)

영등포구청장, 남부토지구획정리 사업소장

수신처 : 영등포구청장, 남부토지구획정리 사업소장

제 4.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과 장

제목 등 건

별지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음으로 시보 및 서울뉴스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끝.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서 장

제목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공고

1. 67.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책정된 지역내의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시행 명령을 받고 사업계획을 후면 공고문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하였기 통보하며,

2. 관계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종람에 공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 목록

동 명	지 번	면 적	비 고

수신처 : 별첨 토지원부의 토지소유자. 끝.